

의안번호	2201937
의 퇴 인	김예지 의원
회 답 일	2024. 8. 1.
추계번호	24C2126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58억 6,100만원(연평균 31억 7,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0조)	99	-	-	-	-	99	19.8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공표(안 제11조)	100	-	-	100	-	200	40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안 제12조)	3	3	3	3	3	15	3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2,917	3,011	3,108	3,205	3,306	15,547	3,109
추가재정소요	3,119	3,014	3,111	3,308	3,309	15,861	3,17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1조(자립지원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자립지원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12조(중앙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3조(자립정보의 작성 및 배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 정책 및 지원 등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장애인이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14조(중양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국가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양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15조(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도지사는 시·도에 지역장애인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23조(지역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관련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24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재가 장애인 및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대한 단기적인 체험 기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9	안 제25조(자립 준비 지원)	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 주거 전환 관련 정보의 제공 2. 제24조의 단기 체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참여 연계 3. 그 밖에 원활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0	안 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학대 및 보호자의 부재, 질병, 사고,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이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1	안 제27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음 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수급자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급여의 추가제공 2. 초기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금 지원 3.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의 연계 5.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6. 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7.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12	안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인의 욕구와 특성 등을 반영하여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주택을 운영할 수 있음 (제3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에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이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입주하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제4항) 입주와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업무를 주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제1항) 재량규정 (제3항) 의무규정 (제4항) 재량규정
13	안 제29조(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8조제3항에 따른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재량규정
14	안 제31조(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이를 중앙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음)	의무규정
15	안 제32조(장애인자립 친화도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시·군·구를 장애인자립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16	안 제33조(거주시설 전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시설 전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0조(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11조(자립지원 실태조사)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12조(중양장애인지역사회 자립지원위원회)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13조(자립정보의 작성 및 배포)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안 제14조(중양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기 추진 중
6	안 제15조(지역장애인지역사회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7	안 제23조(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8	안 제24조(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	×	
9	안 제25조(자립 준비 지원)	×	
10	안 제26조(긴급 지역사회 자립 지원)	×	
11	안 제27조(지역사회 자립 장애인에 대한 지원)	×	
12	안 제28조(장애인주택 등의 제공)	×	
13	안 제29조(주거유지 지원 서비스 제공)	×	
14	안 제31조(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	
15	안 제32조(장애인자립친화도시)	×	
16	안 제33조(거주시설 전환)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안 제23조~제33조 등에 관하여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제정안에 따라 지역장애인자립지원위원회 설치·운영(안 제23조), 단기 체험 시설 설치·운영(안 제24조), 각종 자립 준비 지원(안 제25조~제27조), 주택 제공, 주택 및 주거유지 지원 서비스(안 제28조·제29조), 자립지원 전문인력 양성(안 제31조), 장애인자립친화도시(안 제32조), 거주시설 전환(안 제33조) 등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제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고, 현재 제정안에 따른 지원 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을 추정하기 곤란
- 또한 장애인 자립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현행 사업이 확대되거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확대 및 추진 규모 등을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 정부는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표 2] 참조)을 실시하고 있음

[표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관련 주요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용	2024년도 예산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및 입소 대기자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 발굴 및 자립경로 조성, 대상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주거·일자리·건강 등 복합 서비스를 연계·지원	5,982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 지원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	4,928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 센터	· 지역사회 자립지원 및 거주시설의 기능전환 모델 개발 등 정책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통합 지원	326
통합공공임대지원 융자	·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장애인 우선공급(5%) · 영구임대주택의 장애인 일반공급(1순위, 2순위)	1,401,288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국민임대주택의 장애인 우선공급(고령자·장애인 등 우선공급)	2,850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건설형(통합·영구·국민 등) 공공임대주택의 5% 이상 (수도권의 경우 8%)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전체 공급량, 우선·선순위 공급 대상과 별도	5,000

자료: 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안 제10조~제12조·제15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0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주기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 보건복지부는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가장 최근에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2022년 예산 9,900만원)을 실시하였음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방안 연구” 용역 사례를 참고하되, 2022년 예산 9,900만원이 추계기간 중 동일하게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
- 추계결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9,900만원으로 추계

[표 3]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10조)	99	-	-	-	-	99	1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안 제11조)

-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는 경우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본 추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2023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조사”를 위해 소요한 1억원의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단가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3년 주기로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2억원으로 추계

[표 4]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공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단위: 백만원)	
						합계	연평균
장애인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공표(안 제11조)	100	-	-	100	-	200	4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운영(안 제12조)

-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추계서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운영 시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은 자립지원위원회의 구성, 조직,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원 수를 알 수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유사사례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회원 구성 및 회의 참석수당 단가, 연간 회의 개최횟수 등을 참고하여 추계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으며, 장애인종합계획 수립 등 사유 발생 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 중 15명의 위촉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본 추계에서는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에 15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이들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며, 회의를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억 5,000만원(연평균 300만원)으로 추계

[표 5] 중앙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명, 회)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회의수당 단가(A)	0.1	0.1	0.1	0.1	0.1	0.5	0.1
인원 수(B)	15	15	15	15	15	75	15
회의개최 횟수(C)	2	2	2	2	2	10	2
추가재정소요(A×B×C)	3	3	3	3	3	15	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 제정안에 따라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례를 적용하여, 인건비 및 운영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는 17개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이와 마찬가지로 17개의 지역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에 제시된 2023년 기준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현행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비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¹⁾ 예산의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표 6]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및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예산 비교

구 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A)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B)	B/A
2024년 예산	1,300	326	25.1

자료: 보건복지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단가는 사업 단위 예산을 제외하고 센터 운영비(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및 지방비 합계액)로 한정²⁾
- 지원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지원 단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³⁾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표 8]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단가 추정(2023년)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 (A)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추정(A*25.1%)
합 계	10,252	2,573
서울특별시	654	164
부산광역시	605	152
대구광역시	738	185
인천광역시	579	145
광주광역시	636	160
대전광역시	624	157
울산광역시	478	120
세종특별자치시	319	80
경기도	661	166
강원도	487	122
충청북도	647	162
충청남도	618	155
전라북도	647	162
전라남도	562	141
경상북도	627	157
경상남도	639	160
제주특별자치도	731	183

주: 1.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비는 2023년도 예산 기준

2. 25.1%는 2024년 보건복지부의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예산액 대비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예산액의 비율

3. 단수조정으로 추정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지방재정365의 '2023 회계연도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 및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1) 안 제14조에 명시된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이미 “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음
- 2)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가 자체예산으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은 포함
- 3)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전망치(2024.3.29. 경제전망 기준)

구 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명목임금상승률(%)	2.9	3.4	3.2	3.2	3.2	3.2	3.1	3.1

- 추계결과,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55억 4,700만원으로 추계

[표 9]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5조)	2,917	3,011	3,108	3,205	3,306	15,547	3,1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